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9월 3일

나. 제 출 자 : 정선희 의원 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3. 9. 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에게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(안 제4조)
-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

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- 아토피 체험시설 설치·운영 등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에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 및 제7조에 아토피 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아토피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토피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사업 지침에 따라 시비 50%를 포함한 총 2,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아토피 안심학교 및 건강캠프 운영, 아토피 스크리닝 설문조사 및 검사,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, 아토피·천식 환자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,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

필요한 더욱 폭넓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 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

(정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3년 8월 일

발 의 자 : 정선희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에게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

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마. 아토피 체험시설 설치·운영 등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
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(주요 질병관리체계의 확립)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
-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(건강생활 지원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보건지원과

라. 자치법규안 : 별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아토피질환"이란 아토피 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.
2. "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"(이하 "안심학교"라 한다)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, 아토피질환 교육·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를 말한다.
3. "저소득층"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,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·홍보)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

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에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, 아토피질환 검사,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, 교육·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아토피캠프 운영 등) 구청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아토피 · 천식 의료비 지원 신청서

(☐ 의료급여수급자 ☐ 건강보험가입자 ☐ 추천대상자)

지원 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
	주소					
	학교명		어린이집명			
신청인	성명		연락처		관계	
진료기간	입원	최초 년 월 일 ~ 마지막 년 월 일 (총 일간)				
	외래	최초 년 월 일 ~ 마지막 년 월 일 (총 일간)				
진료비 (원)	총진료비 (A+B+C)	환자부담금 소계(A+C)	급여부분 진료비		비급여부분 진료비(C)	
			법정본인 부담금(A)	보험자 부담금(B)		
신청금액 (A+C)		금 원 (₩)				
입금은행		계좌번호			예금주	
위와 같이 아토피 • 천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)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 1. 저소득 증명서(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) 2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(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) 3. 영수증 원본(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,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) 4.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(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일 제출) 5. 통장사본						